

『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“기금지원”을 “재정지원”으로 제목 변경(안 제7조).
- “장사시설 설치지역”의 용어 정의 신설(안 제7조제2항).
- 준용 규정 신설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.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.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7조에서 제목 “기금지원”을 “재정지원”으로 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 권장사업을 명시하였으며,
-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“장사시설 설치지역”의 용어를 정의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11.29 시행) 및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(‘15.4.29 공포, 시행)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.